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74호

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금 등 조정요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금 등 조정요령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‘버스-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’(당정협의를, ‘23.8.30) 조치사항으로 시외버스 운임을 조정(할증)하여 심야시간 버스 운행이 지속되도록 추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22:00부터 04:00사이 출발하는 시외버스의 운임 할증을 일괄 주간운행 운임의 20퍼센트 범위로 개정(안 제9조제5호)

3. 의견제출

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금 등 조정요령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로 2024년 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

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(안)	수정(안)	사유

나. 성명(법인·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라. 보내실 곳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(전화: 044-201-3827, 팩스: 044-201-5581)